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위원장
람	

제1093호 2015. 06. 11.(목)

차 례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804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용차량관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1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15 - 804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 6. 11.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 공용차량관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운행되고 있는 2호차(전용)의 운행년수(7년 이상) 및 운행거리(12만km 이상)가 “최단운행기준연한”에 도달하여 교체가 필요하나, 인구 50만 돌파와 관내 면적 넓고 공사현장이 많아 현장 방문에 따른 운행량이 증가하여 차형을 변경하고자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차량을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표 1] 차량의 차종·차형·배정대상 및 최단운행 기준연한(제6조 관련)의 표내 승용(전용)의 차형 기준년의 “대형승용차”를 “대형(3,500cc미만)”으로 “중형승용차”를 “대형(2,500cc미만)”으로 변경하고,

나 [별표 2]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제8조 관련)의 표내 차량정수배정 대상기관의 구분청 난의 차형별 대형승용차를 “1대(구청장 전용)”에서 “2대(구청장·부구청장 전용)”로, 중형승용차를 “2대(부구청장 전용 1대, 업무용 1대)”를 “1대(업무용 1대)”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6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재무과장, 전화 560-4161, 팩스 560-27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자료

인천광역시 서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자치법규 정비안 요약

자 치 법 규 명	인천광역시 서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 정 이 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운행되고 있는 2호차(전용)의 운행년수(7년 이상) 및 거리(12만km 이상)가 “최단운행기준연한”에 도달하여 교체가 필요하나, 인구 50만 돌파와 관내 면적 넓고 공사현장이 많아 현장 방문에 따른 운행량이 증가하여 차형을 변경하고자 공용차량 관리규칙을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차량을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표 1] 차량의 차종·차형·배정대상 및 최단운행기준연한(제6조 관련)의 표내 승용(전용)의 차형 기준란의 “대형승용차”를 “대형(3,500cc 미만)”으로 “중형승용차”를 “대형(2,500cc 미만)”으로 변경하고, ○ [별표 2]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제8조 관련)의 표내 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의 구분청란의 차형별 대형승용차를 “1대(구청장 전용)”에서 “2대(구청장·부구청장 전용)”로, “2대(부구청장 전용 1대, 업무용 1대)”를 “1대(업무용 1대)”로 변경
개 정 안	“별지 참조”
신·구조문대비표	“별지 참조”
관계 법령 발췌	“해당 없음”
관련 사업 계획	“해당 없음”
예산수반사항	“별지 참조”
기타 참고 사항	“해당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차량의 차종·차형·배정대상 및 최단운행기준연한(제6조 관련)

차종	차형	배정대상	최단운행기준연한
승용차 (전용)	대형(3,500cc 미만)	· 구청장	최단 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 부터 7년을 경과하고 최단 주행거리가 12 만km를 초과한 경우
	대형(2,500cc 미만)	· 부구청장	
승용차 (의전용)	대형승용차	· 구의회 의장	최단 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 주행거 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 (이 경우 최단 운행 연한이 7년 이상)
승용차 (업무용)	중형승용차	· 구분청	
	소형승용차(「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소형승용차량을 말한다)	· 구분청, 구산하기관	
	경형승용차(「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승용차량을 말한다)	· 구분청, 구산하기관	
	깊형 또는 다목적형 승용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 으로 분류되는 각종 차량을 말한다)	· 구분청, 구산하기관	
승합용	대형승합차(「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대형승합차량을 말한다)	· 구분청, 구산하기관	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물품 내구연한 적용
	중형승합차(「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중형승합차량을 말한다)	· 구분청, 구산하기관	최단운행연한이 차량 의 최초 등록일 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 주행거리 12만 km를 초과한 경우
	소형승합차(「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소형승합차량을 말한다)	· 구분청, 구산하기관	(이 경우 최단 운행 연한이 7년 이상)
	경형승합차(「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승합차량을 말한다)	· 구분청, 구산하기관	

차 종	차 형	배 정 대 상	최단운행기준연한
화물용	대형화물차(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차량을 말한다)	· 구분청, 구산하기관	최단 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 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 주행거리 12만 km를 초과한 경우 (이 경우 최단 운행 연한이 7년 이상)
	중형화물차(최대적재량이 1톤 초과 5톤 미만이거나, 총중량이 3톤 초과 10톤 미만인 차량을 말한다)	· 구분청, 구산하기관	
	소형화물차(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것으로서, 총중량이 3톤 이하인 차량을 말한다)	· 구분청, 구산하기관	
	경형화물차(배기량 800cc 미만인 차량을 말한다)	· 구분청, 구산하기관	
특수용	청소차	· 구분청, 구산하기관	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물품 내구연한 적용
	구급차	· 구분청, 구산하기관	
	분뇨차	· 구분청, 구산하기관	
	진료차	· 구분청, 구산하기관	
	이동수리차	· 구분청, 구산하기관	
	급수·살수차	· 구분청, 구산하기관	
	트럭트렉타	· 구분청, 구산하기관	
	트레일러	· 구분청, 구산하기관	
	렉카차	· 구분청, 구산하기관	
	기타 특수차	· 구분청, 구산하기관	

[별표 2]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 (제8조 관련)

1. 승용차량 기준정수

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	기준 정수	차 형 별		
		대형승용차	중형승용차	소형 및 쉼형, 다목적 승용차
구 분 청	21대	2대 (구청장·부구청장 전용)	1대 · 업무용 1대	18대
구 의회사무국	2대	1대 (의장전용)		1대
보 건 소	4대			4대
출 장 소	1대			1대

※ 단, 경형승용차에 대하여는 승용차량 기준정수에 포함하지 않음

2. 승합용 차량 기준정수

사 업 별	배 정 대 상 · 차 형 및 대 수
통 근 용	가. 통근인원·통근거리·통근시간 등을 고려하여 소속 공무원 정원 100명당 1대를 기준으로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나. 직속기관 : 대중교통의 이용이 곤란하거나 당해 기관의 기능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기타사업용	각종 설비탑재, 지도·단속공무원 수송, 의정활동 지원 등 특수업무분야의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3. 화물용 차량 기준정수

사 업 별	배 정 대 상·차 형 및 대 수
도로사업용	도로의 연장·도로상태·교통량 및 유지·보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각종단속용	주차관리단속 등 각종 단속·지도 등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중형 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동주민센터용	사업용으로 소형화물차량을 적정대수 배정
그밖의 사업용	사업량 등 사업규모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4. 특수용 차량 기준정수

사 업 별	배 정 대 상·차 형 및 대 수
청 소 용	가. 청소차량은 당해 청소지역의 특수성과 수거·처리의 편의 및 차량운행관리의 경제성과 능률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대형·중형·소형 및 압축식·자동식 차량 등을 고루 배정 나. 청소차량의 차형이 고루 배분되지 아니한 기관은 신규 청소차량 정수배정 및 교체 승인 시 이를 조정하여 배정
그 밖의 사업용	사업의 성격, 업무량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대수 배정

신 · 구조문대비표

[별표 1]

차량의 차종·차형·배정대상 및 최단운행기준연한 (제6조 관련)

차 종	개 정 전		개 정 후	
	차 형	배정대상	차 형	배정대상
승 용 (전 용)	대형승용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대형승용차량을 말한다)	구청장	대형(3,500cc미만)	현행동일
	중형승용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중형승용차량을 말한다)	부구청장	대형(2,500cc미만)	현행동일

[별표 2]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 (제8조 관련)

1. 승용차량 기준정수

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	변 경 전		변 경 후	
	차 형 별		차 형 별	
	대형승용차	중형승용차	대형승용차	중형승용차
구 본 칭	1대 (구청장 전용)	2대 · 업무용 1대	2대 (청장 · 부구청장 전용)	1대 · 업무용 1대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개정안은 “대형승용차(「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대형승용차량을 말한다)”를 “대형(3,500cc미만)”으로 “중형승용차(「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중형승용차량을 말한다)”를 “대형(2,500cc미만)”으로 변경한 사항으로 중형차량에서 대형차량의 차량구입비 증가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H사 중형(2000CC미만)하이브리드(프리미엄 급)차량 구입시 32,000천원이며, 대형(2500CC미만) 하이브리드(프리미엄 급)차량 구입가격 34,500천원으로 2,500천원 증가

나. 추계 결과

- 교체대상 차량추계
 - 전용차량(부구청장) : 1대 (2015년 8월)

다. 재원조달 방안

- 2015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구비)

작성자 : 총무국 재무과장 유 미 순

관계법령 참고자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자동차의 종별 구분)

[별표 1] <개정 2014.8.18.>

자동차의 종류 (제2조관련)

1. 규모별 세부기준

종 류	경 형	소 형	중 형	대 형
승 용 자동차	배기량이 1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너비 1. 6미터·높이 2.0 미터 이하인 것	배기량이 1,600cc 미만인 것으로서 길 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 미터 이하인 것	배기량이 1,600cc 이상 2,000cc미만 이거나 길이·너 비·높이중 어느 하 나라도 소형을 초과 하는 것	배기량이 2,000cc이 상이거나, 길이·너 비·높이 모두 소형 을 초과 하는 것
승 합 자동차	배기량이 1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너비 1. 6미터·높이 2.0 미터 이하인 것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인 것으로서 길이 4.7미터·너 비 1.7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승차정원이 16인 이상 35인 이하이 거나, 길이·너 비·높이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여 길이가 9미터 미만인 것	승차정원이 36인이상 이거나, 길이·너비· 높이 모두가 소형을 초과하여 길이가 9미 터 이상인 것
화 물 자동차	배기량이 1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너비 1. 6미터·높이 2.0 미터 이하인 것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것으로서,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	최대적재량이 1톤 초과 5톤 미만이 거나, 총중량이 3. 5톤 초과 10톤 미 만인 것	최대적재량이 5톤 이 상이거나, 총중량이 1 0톤 이상인 것
특 수 자동차	배기량이 1,000 cc미만으로서 길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	총중량이 3.5톤 초 과 10톤 미만인 것	총중량이 10톤 이상 인 것

	이 3.6미터 · 너비 1.6미터 · 높이 2. 0미터 이하인 것			
이 른 자동차	배기량이 50cc미 만(최고정격출력 4킬로와트 이하) 인 것	배기량이 100cc 이하 (최고정격출 력 11킬로와트 이 하)인 것으로 최 대적재량(기타형 에만 해당한다)이 60킬로그램 이하 인 것	배기량이 100cc 초과 260cc 이하 (최고정격출력 1 1킬로와트 초과 1 5킬로와트 이하) 인 것으로 최대적 재량이 60킬로그 램 초과 100킬로 그램 이하인 것	배기량이 260cc (최 고정격출력 15킬로와 트)를 초과하는 것